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합54151 판결 [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종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

피고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.

변론 종결2022. 4. 14.

판결 선고2022. 4. 2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, J1) 은 각 57,081,024분의 2,378,376지분에 관하여, 피고 K, L, M, N, O, P, Q, R은 각 57,081,024분의 297,297지분에 관하여, 피고 S는 57,081,024분의 648,648지분에 관하여, 피고 T, U, V, W는 각 57,081,024분의 432,432지분에 관하여, 피고 X은 57,081,024분의 185,328지분에 관하여, 피고 Y, Z은 각 57,081,024분의 123,552지분에 관하여, 피고 AA은 57,081,024분의 1,097,712지분에 관하여, 피고 AB은 57,081,024분의 3,841,992지분에 관하여, 피고 AC, AD, AE2) 은 각 57,081,024분의 2,744,280지분에 관하여, 피고 AG, AH, AI, AJ은 각 57,081,024분의 274,428지분에 관하여, 피고 AK는 57,081,024분의 792,792지분에 관하여, 피고 AL, AM, AN, AO는 각 57,081,024분의 528,528지분에 관하여, 피고 AP, AQ, AR, AS, AT은 각 57,081,024분의 1,585,584지분에 관하여, 피고 AU, AV, AW, AX, AY, AZ는 각 57,081,024분의 264,264지분에 관하여, 피고 BA은 57,081,024분의 365,904지분에 관하여, 피고 BB, BC, BD, BE, BF는 각 57,081,024분의 243,936지분에 관하여, 피고 BG, BH, BI, BJ은 각 57,081,024분의

288,288지분에 관하여, 피고 BK, BL, BM은 각 57,081,024분의 352,352지분에 관하여 2011. 9.

16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,

나.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N, BC, BO, AB, L는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

2011. 7. 23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

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1) 원고는 BQ씨 중시조 BR의 23대손 소외 망 BS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망 BS이 1635(조선인조). 12. 18. 사망한 후 그 후손들이 분묘의 수호, 관리 및 시제를 모시면서 종중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내오는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이고, 원고의 대표자는 BT이다.

2) 원고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망 BU, BV, BW, BX에게,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BV, BY, BZ 및 피고 CA, BN에게 각 명의신탁을 해놓았고, 피고들은 BU, BV, BW, BX, BY, BZ의 상속인들 및 이들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다(이하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, 2항 기재 부동산을 각 '이 사건 제1 토지', '이 사건 제2 토지'라고 한다).

나. 명의신탁과 신탁해지

1) 원고는 1977. 12.경 소외 C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, 당시 원고의 종원인 BU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77. 12. 16. BU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, 1978. 6. 9. 명의신탁자를 추가하기로 하여 종원들인 BV, BW, BX 명의로 각 4분의 1지분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BY, BV, BW, BX 등 4명에게 각 4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. 또한 원고는 1977. 11.경 소외 CC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, 당시 원고의 종원이던 BV, BU, BZ, CA 및 피고 BN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77. 12. 3. 위 5명의 명의로 각 5분의 1지분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제1, 2 토지를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후 원고가 점유, 관리하여 왔는데, 이 사건 제1 토지의 명의수탁자 BU, BV, BW, BX이 모두 사망하여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, 이 사건 제2 토지의 명의수탁자 BV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AB이, CA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L가, BY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BO이, BZ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BC가 그 지위를 각 승계하였고, 피고 BN은 명의수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.

3)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106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, 그 판결의 시효만료가 임박하였고, 일부 피고 등이 사망한 관계로 2021. 4. 11.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제1, 2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.

라. 피고들의 지분계산

1)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지분 가)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 BU(수탁지분 4분의 1)이 1996. 2. 20.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별지3-1 계산표와 같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, C, D, E가 각 14,784분의 616지분, 피고 S가 14,784분의 168지분, 피고 T, U, V이 각 14,784분의 112지분, 피고 K, L, M, N, O, P, Q, R이 각 14,784분의 77지분, 피고 X이 14,784분의 48지분, 피고 Y, Z이 각 14,784분의 3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나) 명의수탁자 BV(수탁지분 4분의 1)가 1988. 4. 18.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별지3-2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AB이 208분의 14지분, 피고 AC, AD, AE(생년월일:

BP생)이 각 208분의 10지분, 피고 AA이 208분의 4지분, 피고 AG, AH, AI, AJ이 각 208분의 1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다) 명의수탁자 BW(수탁지분 4분의 1)이 2006. 11. 11.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별지3-3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F, G, H, 피고 I, J(생년월일: AF생)이 각 216분의 9지분, 피고 AK가 216분의 3지분, 피고 AL, AM, AN이 각 216분의 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라) 명의수탁자 BX(수탁지분 4분의 1)이 1997. 9. 2.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별지3-4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AP, AQ, AR, AS, AT이 각 92,664분의 2,574 지분, 피고 AU, AV, AW, AX, AY(개명전: CD), AZ(개명전: CE)가 각 92,664분의 429지분, 피고 BA이 92,664분의 594지분, 피고 BB, BC, BD, BE, BF가 각 92,664분의 396지분, 피고 W가 92,664분의 702지분, 피고 BG, CF, BI, BJ이 각 92,664분의 468지분, 피고 AO가 92,664분의 858지분, 피고 BK, BL, BM이 각 92,664분의 57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2)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지분 이 사건 제2 토지의 명의수탁자 BV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AB이, CA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L가, BY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BO이, BZ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BC가 각 그 수탁지분 5분의 1지분 지위를 승계하였고, 피고 BN은 수탁지분 5분의 1지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

○ 피고 B, AU, AV, AW, AX, AY, AZ, BD, BF, BO, AN에 대하여: 갑 제1 내지 6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○ 피고 B, AU, AV, AW, AX, AY, AZ, BD, BF, BO,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: 자백간주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, 2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 및 명의수탁자들의 최종상속인으로서 위 각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,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지분(주문 기재 지분: 별지3-5 계산표 기재 참조)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봄메

판사이신애

판사김경중

별지

1) 생년월일: AF생

2) 생년월일: BP생